



# 2022 고양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 ○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 건)

합계	인사·기획(10)					예산·회계(8)				공유재산·계약(11)			기타(4)		
	이사회	위원회	채용	기록물	공인	수당	급여	재정	업추비	보조금	수익금	물품	계약	지적사항	프로그램
<b>33</b>	2	2	4	1	1	3	2	1	1	1	2	2	7	2	2

##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지적사항 (조치건수)	합계		징계	시정 (금액)	주의	개선	통보	시정	현지조치
	인원	금액							
<b>33</b> (44)	0	6,797	-	3 (6,797)	21	1	3	6	10

-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사항 이행결과 제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 양 시**  
**[ 감 사 관 ]**

# || 목 차 ||

I. 감사 실시 개요 .....	1
II. 대상 기관 현황 .....	3
III. 감사 결과 .....	5
① 총평 .....	5
② 분야별 지적사항 .....	6
③ 주요 개선과제 .....	6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7
① 지적사항 총괄표 .....	7
②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7
③ 주요 지적사항 .....	9
④ 현지처분 지시서 요약 .....	31
V. 시민감사관 의견 .....	36
VI. 우수사례 .....	37
VII. 향후 추진계획 .....	45

# 2022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 I 감사 실시 개요

### 1. 감사 배경 및 목적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2016. 10.) 이후 재단운영 6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재단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감사 실시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고양시 감사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 자료를 요구·분석하였으며, 이후 사전회의(2022. 2. 28.)와 예비조사(2022. 3. 2. ~ 3. 11.)를 거쳐 2022. 3. 1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 3. 감사 대상

이번 감사는 2019. 2월부터 2022.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에서 집행한 업무 중 인사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각종 계약 및 재산관리 등 재정 운영 관리실태,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관리 실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각종 사업추진의 적정성, 기타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단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 4. 열린감사 제도 운영

#### ○ 감사 사전예고 실시

- 예고방법 : 고양시청 및 재단홈페이지에 감사 사전예고 안내문 게시

- 제보기간 : 2022. 2. 1. ~ 2. 25.

- 제보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제보

○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 사전홍보 : 2022. 2. 1. ~ 2. 25. (감사계획 통보시 안내)

- 설치운영 : 2022. 3. 14. ~ 3. 25. (감사기간 내 운영)

○ 공감회의 개최

- 일 시 : 2022. 3. 14.(월) 10:30 ~ 11:00

- 내 용 : 감사 중점사항 안내 및 감사반원 갑질신고 안내 등

○ 강평회 개최

- 일 시 : 2022. 3. 25.(금) 15:30 ~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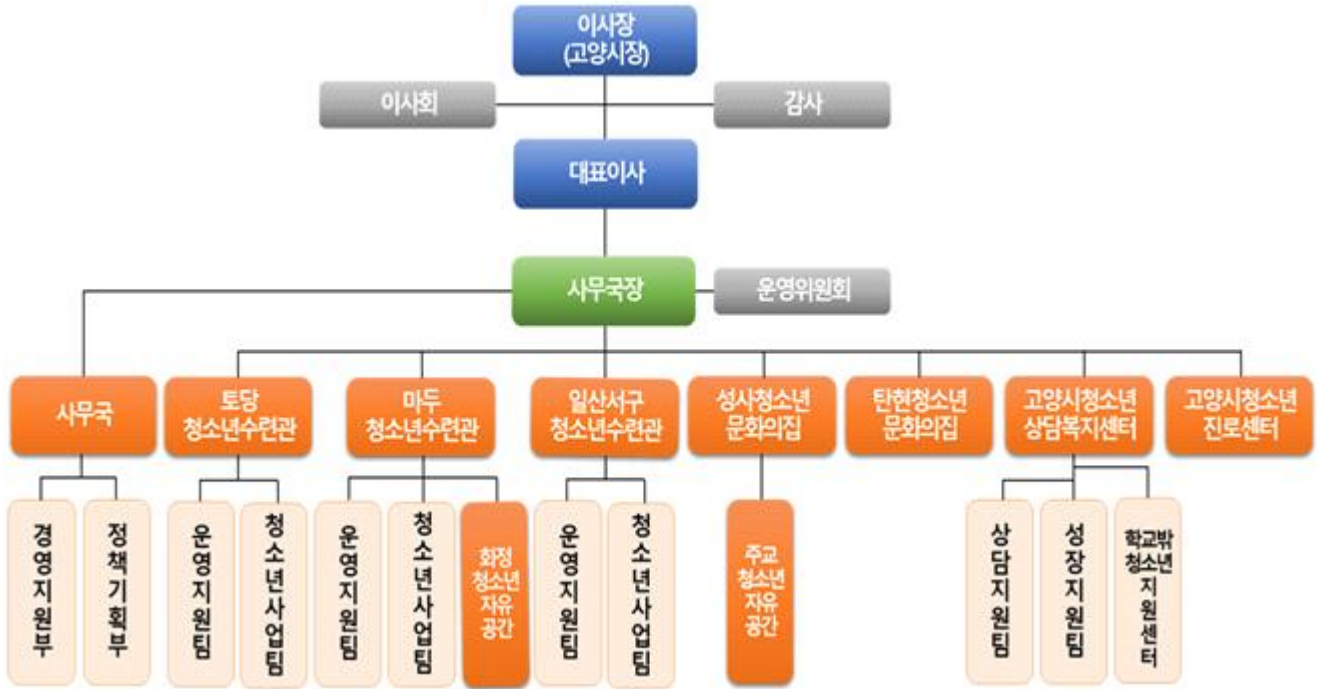
- 내 용 :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 현장사진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조직 : 1사무국, 3수련관, 2문화의집, 2센터, 2자유공간



□ 인력 : 일반직(정원 67명/현원 53명), 공무원직(정원 19명/현원 16명)  
(2022. 4. 기준 / 결원을 20%)

구분	일반직			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사무국	12	13	△1	-	-	-
수련관	토당	13	8	5	4	-
	마두	11	7	4	1	-
	일산서구	11	9	2	4	-
문화의집	성사	4	3	1	4	3
	탄현	4	3	1	3	3
센터	상담	7	5	2	-	-
	진로	5	5	-	-	-
자유공간	화정	-	-	-	2	-
	주교	-	-	-	1	1
계	67	53	14	19	16	3

## □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11,156,489	10,649,749	10,526,062	11,162,805

## □ 조직별 주요 업무 및 기능

부서명	주요업무 및 기능	
청소년 수련관	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동아리활동 운영</li> <li>○ 청소년 스포츠(농구 등), 문화활동 및 청소년축제 운영</li> <li>○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지원 프로그램</li> <li>○ 청소년 교육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li> </ul>
	마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형 평화프로젝트,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고양시청소년협의회</li> <li>○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해외문화캠프, 항일유적지 탐방</li> <li>○ 지역사회 불법촬영 근절, 양성평등 프로젝트</li> <li>○ 청소년교육활동, 학교연계 등</li> </ul>
	일산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워킹캠프, 포용적 세계시민양성, PBL</li> <li>○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기획봉사, 청소년여행지원사업</li> <li>○ 청소년창업지원, 청소년창작 연극, 청소년메이커 지원사업</li> <li>○ 청소년권리인식확산, 청소년교육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li> </ul>
청소년 문화의집	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 연합활동</li> <li>○ 친환경 메이커 프로젝트, 청소년미디어캠프, 청소년 캠페인 운영</li> <li>○ 청소년 스포츠(축구 등) 프로그램, 성사창의체험학교</li> <l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li> </ul>
	탄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연계 대안학습, 청소년자치동아리, 청소년자원활동 프로젝트</li> <li>○ 청소년문화놀이 복합공간 운영, 후기청소년 자원활동</li> <li>○ 청소년교육활동, 별카페 홍보사업</li> <li>○ 청소년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등</li> </ul>
센터	상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개인 및 집단상담</li> <li>○ 부모교육특강, 카운슬러대학,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li> <li>○ 청소년이동상담버스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서비스, 연합아웃리치</li> <li>○ 여성가족부,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li> </ul>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현장직업체험 패키지, 직업실무체험 패키지</li> <li>○ 4차 산업혁명 나노드림 플러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li> <li>○ 진로 영어캠프, 진로기획사업 콘서트, 직업인 멘토링</li> <li>○ 꿈길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부모지원단, 진로진학지원단 등</li> </ul>
자유 공간	화정, 주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자율적 문화공간 등), 청소년자치위원회</li> <li>○ 청소년자발적 봉사활동, 공유주방을 통한 자율적 공간확대 등</li> <li>○ 청소년자연친화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등</li> </ul>

### Ⅲ 감사 결과

#### 1. 총평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양시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으로써,
-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 권리증진 및 시민역량 강화, 청소년진로사업 확대,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9년 여성가족부 평가 최우수(3개) 및 우수(1개) 등급 선정,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 2021년 여성가족부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재단 청소년시설 5개 전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작품공모전 수상(교육부장관)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공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번 종합감사는 2016년 11월 재단 출범 이후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와 인사관리, 재정운영 관리실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등의 노력이 요구됨.

## 2.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 건)

합계	인사·기획(10)					예산·회계(8)					공유재산·계약(11)			기타(4)	
	이사회	위원회	채용	기록물	공인	수당	급여	재정	업추비	보조금	수익금	물품	계약	지적사항	프로그램
<b>33</b>	2	2	4	1	1	3	2	1	1	1	2	2	7	2	2

## 3. 주요 개선과제

- 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16. 11. 출범 당시 1사무국·3청소년시설, 28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직이 확대되어 <2022. 4. 현재> 1사무국·3수련관·2문화의집·2센터·2자유공간, 69명으로 확대 되었으며, 2022. 하반기 개관 예정인 송포문화의 집 운영 등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조직이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재단의 실질적인 감사업무 수행 인력이 없어, 조직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내부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확보하고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결원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시 통합채용 연 2회 실시 필요
  - <2022. 4. 기준> 직원 결원을 20%에 달하여(정원86명/현원69명), 신속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나, ① 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구인의 어려움이 현존하여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② 市 예산담당관에서 년 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로 신속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결원 기간 장기화됨 ⇨ 市 예산담당관에 건의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지적사항 (조치건수)	합 계		징계	시정 (금액)	주의	개선	통보	시정	현지조치
	인원	금액							
<b>33</b> (44)	0	6,797	-	3 (6,797)	21	1	3	6	10

###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원)

일련 번호	관계부서	건 명	처 분 요 구		감사자
			처 분 종 류	재 정 상 조치금액	
계	-	<b>총 33건</b> (주의 10, 시정 3, 주의·개선 1, 주의·시정 6, 주의·통보 3, 주의·현지조치 1, 현지조치 9)	-	<b>3건</b> 6,797	-
1	사무국	이사회 회의록 보존기간 미준수	현지조치	-	강기범
2	사무국	이사회 운영절차 미준수	현지조치	-	강기범
3	사무국	각종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현지조치	-	강기범
4	사무국	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지조치	-	안용섭
5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개선	-	박규동
6	사무국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지조치	-	박규동
7	사무국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초일산입	현지조치	-	박규동
8	사무국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사용 부적정	현지조치	-	박규동
9	사무국	각종 위원회 문서 보존기간 미준수	현지조치	-	강기범
10	사무국	공인 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	강기범
11	사무국	복지점수 지급 승인 부적정	주의· 현지조치	-	최의영
12	사무국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지연 제출 및 미등재	현지조치	-	박규동

일련 번호	관계부서	건 명	처분요구		감사자
			처분종류	재정보증 조치금액	
13	사무국 등 5개부서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시정	130	윤정대
14	사무국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주의·시정	6,540	윤정대
15	사무국	퇴직자 연가보상비 정산 부적정	시정	127	윤정대
16	사무국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관련 업무 소홀	주의·시정	-	안용섭
17	사무국 등 3개부서	업무추진비 사전품의 미이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	안용섭
18	토당청소년 수련관	사전기술지원협약 미체결 등 계약업무 소홀	주의	-	유정훈
19	사무국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주의	-	강기범
20	마두청소년 수련관	대관 사용료 감면 업무 소홀	주의·통보	-	최의영
21	사무국 등 6개부서	대관 사용료 납부 및 수입금 관리 업무 소홀	주의·통보	-	최의영
22	사무국 등 6개부서	도서 마일리지 관리 소홀	주의	-	안용섭
23	사무국 등 7개부서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업무 소홀	주의·시정	-	안용섭
24	전 부서	대가지급 업무 소홀	주의	-	유정훈
25	사무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금급 지급 시 채권확보 업무 소홀 및 관련 예산· 회계규정 정비	주의·시정	-	유정훈
26	서구청소년 수련관	전문공사업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황재용
27	마두,서구 청소년수련관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주의·시정	-	황재용
28	사무국 등 9개부서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	황재용
29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4개부서	시설공사 고용 산재보험료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부적정	주의	-	황재용
30	사무국	자체 감사 미실시 등 관련 업무 소홀	시정	-	박상희
31	사무국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소홀	주의	-	박상희
32	사무국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관리 운영 부적정	시정	-	김현우
33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참여 청소년관리 부적정	주의	-	김현우

### 3. 주요 지적사항

#### 1)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no. 5)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Ⅲ.직원이 인사(Ⅰ신규채용)에 따르면,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에서는 2020년 1/4분기를 제외한 2019. 2. 1.부터 2022. 1. 31.까지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재직 임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제4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재단에서는 2019~2021년 각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격증사본 등)를 접수하였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채용관련 서류를 파기하여야 했음에도 관련 규정과는 다르게 최종 불합격자의 불필요한 관련서류를 기록물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등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소홀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채용 과정에 대한 기관 내·외부 감사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채용서류를 인사·감사부서에서 동시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전과정에 감사인입회·참관 활성화로 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함에도

⇒ 2019. 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서류를 인사부서에서만 보관하고

감사부서에서는 보관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 채용 시 전형단계별로 감사부서 직원이 입회를 하여야 하나 미입회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매 분기별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하여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철저 “주의”</li> <li>·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불합격된 응시자의 관련서류를 「개인 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주의”</li> <li>· 채용관련 서류를 인사·감사부서에서 동시보관 운영하고, 채용 시 전형단계별로 감사부서 직원을 입회함으로써 채용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직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개선”</li> </ul>
----------	---

## 2) 공인 관리 부적정 (no. 10)

- 「공인관리 규정」 제8조(인영의 보존)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재단의 모든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고, 사무국장은 인영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재단사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공인사용 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 ⇨ 재단에서는 재단 설립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이미지관인 대장, 공인대장, 폐인대장, 인영부, 공인 날인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과 매년 2월 1일 현재 재단의 모든 공인의 인영을 “별지 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해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공인 신조(개각) 및 폐인현황**

구분	직인명	신조(개각)일	폐인일	공고여부	공고일
1	주교동청소년카페의장	2017. 5. 23.	-	미공고	-
2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2018. 5. 25.	-	미공고	-
3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장	2018. 5. 25.	-	미공고	-
4	화정청소년자유공간의장	2020. 3. 6.	-	공고	2020. 3. 6.
5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의장	2020. 3. 6.	-	공고	2020. 3. 6.
6	주교동청소년카페의장	-	2020. 3. 6.	공고	2020. 3. 6.

※ 자료 : 고양시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공인관리 규정」에 따라 재단 설립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 이미지관인 대장, 공인대장, 폐인대장, 인영부, 공인 날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인관리 업무 철저 “주의-통보”</li> <li>· 2017. 5. 23. 개각한 “주교동청소년카페의장” 등 3건의 공인에 대하여 공고할 것 “통보”</li> </ul>
----------	--

### 3) 복지점수 지급 승인 부적정 (no. 11)

- 재단의 「2019~2021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정친화 항목에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인화비용,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가족 생일선물을 위한 단순용품”의 경우에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재단에서는 선물용 물품 구매 승인 현황(2019~2021년)과 같이 가족선물 용도로 구매한 물품(18개)이 「2019~2021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3,415,262원 상당의 복지점수(복지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승인하여 관련 업무 소홀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임직원이 복지카드 사용 후 복지점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과 재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칙」,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복지점수가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li> </ul>
----------	---

###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no. 13)

- 재단 「출장여비규정」 제9조3(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 여비)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항 및 3항에 따르면 공용 차량을 이용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여비를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하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재단에서는 ① 동일한 일자에 다수의 출장을 한 경우 5건에 국내여비의 일비 지급한도인 2만원을 초과하여 총6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 ②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하여야하나 6건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여 총6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 ③ 관내출장 시 청소년재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출장 1건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여 총 1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관련 업무 소홀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등 재단 산하 기관에서 국내 출장시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 “주의”</li> <li>·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외 4개 기관장은 여비규정과 달리 국내 출장자에게 초과 지급된 여비를 환수조치 “시정”</li> </ul>
----------	--

### 5)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no. 14)

○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나

⇒ 재단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 5명에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산정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지기기간의 임금 및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퇴직연금 금6,540,240원을 과소 지급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퇴직연금이 과소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시 업무 철저 “주의”</li> <li>· 조아라 등 직원 4명에게 과소 지급된 퇴직연금 6,649,210원을 지급하고 김빛나에게는 과다 지급된 퇴직연금 108,970원을 환수(정산)조치 “시정”</li> </ul>
----------	---

**6) 퇴직자 연가보상비 정산 부적정 (no. 1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재단 「복무규정」 제14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 「보수 규정」 제19조(연차수당)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재단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연차기간은 최초 임명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며, 소정의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 ⇒ 재단에서는 퇴직한 직원 2명에 대해 퇴직 당시까지 연가 미사용 내역을 상이하게 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를 잘못 지급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퇴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시 연차일수 산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차지은에게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82,260원을 지급하고, 김수아에게 과다 지급된 45,610원을 환수조치 “시정”</li> </ul>
----------	--

**7)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관련 업무 소홀 (no. 16)**

- 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14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직

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이를 매년 갱신하여야 함에도

⇒ 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최소 8일 에서 최대 11일까지 지연하여 가입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갱신업무 소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고,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재단에서는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을 (주)서울보증보험과 직위포괄 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계약업무담당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5백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설정 한도액에 미달하게 가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갱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보증보험 관리업무 철저 <b>“주의”</b></li> <li>·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재단 「예산회계 규정」으로 제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업무 담당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b>“시정”</b></li> </ul>
----------	---

## 8) 업무추진비 사전품의 미이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no. 17)

○ 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에 따르면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그 집행을 사전에 품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재단에서는 청년멘토 의견청취, 재단 홍보 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120건(총7,324,920)을 집행하면서 선(先) 품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카드사용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43일 이상 늦게 품의를 한 사실이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 10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전체 직원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 ⇨ 재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택배비 및 직원 명함 제작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건, 73천원)에서 집행하였고, 전체 직원이 아닌 각종 회의 및 특정 직원격려 등으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24건, 1,260천원)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대상을 포함한 사전품의 절차를 이행하고,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 업무 철저 “주의”
----------	--

**9) 사전기술지원협약 미체결 등 계약업무 소홀 (no. 1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2-라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명기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위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 ⇒ 재단에서는 사업의 입찰 공고를 하면서 제조사·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요장비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한 사실이 있음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 재단에서는 물품계약을 추진하면서 납품 완료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준공검사 업무 소홀

처분 요구	· 앞으로 「지방계약법」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필요한 계약을 입찰 공고 시 기술지원사와 미리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게시하여 주시고, 계약 완료 시 계약 이행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주의”
----------	--

## 10)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no. 1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조사업자를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사모로부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받거나, 재단에서 경기도청, 경기도 시·군, 고양시 부서에 관련사실에 대하여 조회한 사실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학사모” 보조사업(“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토론 오감교육) 수행 상황 점검 및 감독 소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부적정, 모집계획 및 대상자 선발 미이행
- 홍보물 제작 및 발송여부 미확인, 목적외 사용 미확인(문구류 구입)
- 프로그램 운영 미확인 및 설문조사 실시 여부 미확인
- 강사수당 지급 기준 미준수 등

처분  
요구

- ‘2. 보조사업 대상자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미검토’ 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를 확인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수급자격 확인·점검 절차 철저 **“주의”**
- ‘3. 보조금교부 결정 절차 미준수’ 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명시하고,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를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보조금 교부 및 운영 절차 철저 **“주의”**
- ‘4.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통보 미준수’ 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심사 후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반드시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절차 철저 **“주의”**
- ‘5.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토론 오감교육(2021년, 보조사업자-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소홀’ 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부적정”, “모집계획 및 대상자 선발 미이행”,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여부 미확인”, “홍보물 제작 및 발송여부 미확인”, “문구류 용도 외 사용 미확인”, “프로그램 운영 미확인”, “강사자질 확인 소홀 및 강사료 공통기준 미준수”, “설문조사 실시 여부 미확인” 등 보조사업 이행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

	<p>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b>“주의”</b></p> <p>· ‘보조사업자가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하여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강사료가 과다하게 지급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b>“주의”</b></p>
--	--

**11) 대관 사용료 감면 업무 소홀 (no. 20)**

○ 재단 「시설운영 규정」 제10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이라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및 별표 2(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에 따르면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하나

⇒ 재단에서는 관내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강연장, 동아리실, 깨움실(강의실)을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대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대관운영 지침」(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총 16건의 대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처리 하는 등 대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 소홀

<p>처분 요구</p>	<p>·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대관 운영지침 정비 <b>“통보”</b></p> <p>· 앞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연찬을 통해 조례를 위반하여 대관 사용료가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b>“주의”</b></p>
------------------	--

12) **대관 사용료 납부 및 수입금 관리 업무 소홀 (no. 21)**

○ 재단 「시설운영 규정」 제8조(이용대상 등) 내지 제10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대상, 운영시간, 휴관일 등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사용신청, 사용승인 제한,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료) 및 같은 조례 규칙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설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 재단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 등 5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대관 사용료 납부시기를 「대관운영지침」으로 별도 규정하여 적절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최단 1일에서 최대 126일을 지연하여 납부(150건)하는 등 대관 사용료 납부 업무 소홀

<p>처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시에 대관 사용료를 납부하고, 효율적으로 대관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통된 대관운영지침으로 정비·운용 <b>“통보”</b></li> <li>· 앞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대관 사용료 등 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관 사용료 납부 및 수입금 관리 업무 철저 <b>“주의”</b></li> </ul>
------------------	---

13) **도서 마일리지 관리 소홀 (no. 2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과)에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별표 3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받아 구입하여야 하나

⇒ 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용 도서 구입(총 377권, 5,975천원)으로 발생한 마일리지 총 543,795점을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에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 구입 시에 이를 우선 할인 및 차감받아 구입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사용하였고, 마일리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183,970점)되는 등 도서 마일리지 관리 소홀

처분 요구	· 도서 구매에 따른 마일리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 마일리지 관리업무 철저 “주의”
----------	---

#### 14)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 업무 소홀 (no. 2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1항에서는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트북 및 카메라 등의 정수대상 물품(총 6종 29대

207,489천원)을 구입하였으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아 물품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정수물품 관리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의 전산화)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2항에 의거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 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단에서는 물품 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체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소관물품에 대해 물품목록번호를 적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자체품목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에 전자태그가 아닌 바코드를 붙여서 관리하는 등 물품 분류체계를 통일화, 표준화 하지 않아 물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물조사에서 누락되는 물품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b>“주의”</b></li> <li>· 효율적이고 적절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정하고, 물품의 취득·사용·처분 등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방안 마련 <b>“시정”</b></li> </ul>
----------	---

### 15) 대가지급 업무 소홀 (no. 24)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및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때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또는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단은 “통합홈페이지 1차 유지보수” 등 57건의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부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또는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게는 1일, 많게는 21일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도 미지급

처분 요구	· 앞으로 이행이 완료된 계약 종료 후에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주의”
----------	---

#### 16) 선금급 지급 시 채권확보 업무 소홀 및 관련 예산·회계규정 정비 (no. 2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단에서는 “선금 채권확보 부적정 현황” 과 같이 ‘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이동 상담버스 물품 및 버스개조’ 에서는 선금 지급 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기간만큼 가산한 증권·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아서 보증기간이 91일이 부족하게 되었고, ‘청소년시설 모델연구용역’ 은 선금 보증기간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60일이 부족한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 보드게임 연구개발’ 에서는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그 결과, 준공 전에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절 준공하게 될 경우 선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우려 초래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보장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 업무 철저 <b>“주의”</b></li> <li>· 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43조 제3항을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 <b>“시정”</b></li> </ul>
----------	---

**17) 전문공사업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no. 26)**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 재단에서는 2019. 8. 16. 태찬산업공사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사무실 화재감지 주경종 설치공사” 계약(계약금액 891천 원)을 체결하면서 위 업체가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 초래

처분 요구	· 앞으로 전문공사를 계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주의”
----------	---

### 18)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no. 2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중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1호, 2호 규정에 의거 2년 내지 3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 재단에서는 “2019 마두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보수공사” 등 총 3건의 계약(계약금액 6,171천 원)을 체결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하여야 했음에도 1년 또는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공 후 소방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폐쇄장치 설치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시정”</li> <li>·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공사 계약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업무를 철저히 “주의”</li> </ul>
----------	--

### 19) 하자검사 업무 소홀 (no.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이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 재단에서는 “진로센터 전기공사” 등 공사 40건에 대하여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표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 미실시 공사현황” 과 같이 “진로센터 전기공사” 등 공사 39건에 대해 최종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불안전 요소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실시되지 않았고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각종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이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기·최종 하자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검사 관리업무 철저히 “주의”</li> </ul>
----------	--

### 20) 시설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부적정 및 고용·산재보험료 확인 업무 소홀 (no. 29)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재단에서는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화재감지 주경종 설치공사” 등 총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18,401천 원)을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에 따른 설계내역서 작성 시 기준 보험요율을 초과 적용하여 그 결과 원가 계상과정에서 총 3,137원을 과다 산정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높게 결정되어 계약금액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 초래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보험료 등의 납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 그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 재단에서는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화재감지 주경종 설치공사” 등 총 3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16,691천 원)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 개시(공사) 명으로 가입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감사기간(2022. 3. 24.) 중에 제출받아

보험료 납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인 업무 소홀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계산에 따른 설계내역서 작성 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요율 산정 업무에 만전 “주의”</li> <li>· 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인 업무 철저히 “주의”</li> </ul>
----------	--

## 21) 자체감사 미실시 등 관련 업무 소홀 (no. 30)

○ 재단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에 따르면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부서 및 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복무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감사계획의 통보)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매년 감사 및 수감계획을 파악·수립하여 1월 중에 피감사 부서 또는 시설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재단에서는 2016년 재단설립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된 자체 감사업무 소홀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및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히 “시정”</li> </ul>
----------	---

## 22)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소홀 (no. 31)

○ 「고양시 감사규칙」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및 제29조(이행결과의 제출)에 따르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요구·통보 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고양시 감사관에서는 2019년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9. 10. 31. 「2019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처분요구 받은 총 21건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시정요구 2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이행지연 하였으며 최종 2021. 12. 31.에 집행전말 완료보고를 하는 등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 업무 소홀

처분 요구	· 앞으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전말 관리 업무 철저 “주의”
----------	---

### 23)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관리 운영 부적정 (no. 32)

-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매뉴얼(이하 매뉴얼) 제6장 ‘운영 전담인력 관리’에 따르면 체험활동 강사 인력은 해당 분야 우수 전문 강사를 선발하고, 학습지원 활동 강사 선발은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하며, 매뉴얼 제7장 일반 업무운영 관리(예산 및 회계관리)에 따르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과 자체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과 회계관리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재단의 운영 기관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강사 채용 공고 시 “재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공고 하였음에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5,16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 위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체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일괄된 기준 없이 강사료를 지급

처분 요구	·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강사 관리에 대한 재단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강사관리 및 운영에 철저 “시정”
----------	--

#### 24) 학교밖지원센터 참여 청소년관리 부적정 (no. 33)

○ 여성가족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지침」 예산집행 기준 및 센터 「2022년 학교밖 급식지원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및 회의 진행 참여자들에게는 식사, 다과 등을 제공 할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식비는 회당(1일 총 3회 지원 가능) 1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 재단에서는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자(이하 “방문자”)들에게 “일일 센터 방문 증빙 출석부(이하 출석부)” 를 작성하여 센터 방문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방문자들 중 급식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 신청대장” 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급식대장에 서명한 청소년 들이 출석부에 부존재 하는 등 급식비 지원 및 센터 방문자 현황 관리 업무 소홀

처분 요구	·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출석 및 급식지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방문자 출석현황 및 관리 업무 철저 “주의”
----------	---



#### 4. 현지처분 지시서 요약

제목	<b>이사회 회의록 보존기간 미준수 (no. 1)</b>
위법 부당 내용	<p>○ 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20조(회의록)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의결사항의 경과요지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서면의결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해야 함에도,</p> <p>⇒ 재단에서는 재단 설립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부의원안에 대한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 운영계획”, “회의록” 및 “서면의결서”에 대한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 운영결과보고”에 대한 결재를 완료 후 문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문서를 보존하고 있음</p>
조치할 사항	<p>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 운영계획”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이사회 운영결과보고”에 대하여 보존기관을 영구보존으로 변경하시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철저 “주의”</p>
제목	<b>이사회 운영절차 기한 미준수 (no. 2)</b>
위법 부당 내용	<p>○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부의절차) 제1항에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가 입안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부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략)</p> <p>⇒ 재단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사장의 사전 결재를 회의 개최 1일전부터 4일전까지 결재를 받은 사실과 사후 결재완료를 받는 사실, 이사회 소집 통보에 있어 각 이사에 회의 개최 1일전부터 6일전까지 통보한 사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이사회 개최일 이후 8일부터 14일까지 통보함으로써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조치할 사항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주의”
제목	<b>각종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no. 3)</b>
위법 부당 내용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2조(회의록) 제3항에 따르면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수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공개 시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단에서는 각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재단 설립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재단 설립이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회의록의 공개시기,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 “주의”
제목	<b>위원회 구성 부적정 (no. 4)</b>
위법 부당 내용	○ 재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구성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래 [표] “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황 ‘과 같이 특정성별 초과,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미징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시기 바라며,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징구하는 등 위원회 구성 관련 업무 철저 “주의”
제목	<b>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no. 6)</b>
위법 부당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재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률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표] “2020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산정내역” 과 같이 2020년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2,216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부족인원 발생에 대비하여 연초 직원채용계획(안)에 장애인 의무고용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주의”
제목	<b>선임직 이사(비상임) 공개모집 공고 초일산입 (no. 7)</b>
위법 부당 내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II.임원의 인사 (④임원 후보자의 모집)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재단에서는 2019년도 선임직 이사(비상임) 공개모집 공고기간을 2019. 10. 29.부터 2019. 11. 12.까지 초일을 산입하여 15일간, 재공고는 2019. 11. 14.부터 2019. 11. 20.까지 초일을 산입하여 7일간 공고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임원 모집 공고 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기간의 모집 공고 게시 철저 “주의”
제목	<b>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사용 부적정 (no. 8)</b>
위법 부당 내용	○ 재단 「복무규정」 제3조(의무) 및 제20조(공가)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가의 사용은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감사대상 기간 중에 공가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2명(3건)이 건강검진의 사유로 소속 부서장에게 공가를 허가 받았으나 ①공가 당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②모든 검진을 1회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2회로 나뉘어 사용하여 당초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 “주의”
제목	<b>각종 위원회 문서 보존기간 미준수 (no. 9)</b>
위법 부당 내용	○ 「사무관리 규정」 제23조(보존기간)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문서 보존기간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문서종류 중 자문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규정 ⇒ 그런데 재단에서는 재단 설립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종위원회 관련 문서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5년, 10년, 영구보전으로 설정하여 보존하고 있어 「사무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재단 개관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의 자문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시고, 영구보전이 필요한 문서종류에 대하여는 규정에 명시하여 보존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사무관리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보존기간을 준수 “주의”

제목	<b>특별점수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관리 및 검토 소홀 (no. 11)</b>
위법 부당 내용	<p>○ 재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칙」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및 2019 ~ 2021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점수는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 복지포인트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p> <p>⇒ 재단 사무국에서는 특별점수(결혼) 지급 현황(2019~2021년)과 같이 실제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인관계 여부만을 검토하여 특별점수(결혼) 600점(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특별점수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관리 및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조치할 사항	<p>임·직원에 대한 복지점수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검토 업무 철저 “주의”</p>
제목	<b>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지연 제출 및 미등재 (no. 12)</b>
위법 부당 내용	<p>○ 재단 공무국외여행규정제23조(귀국보고서)제1항에 따르면 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참조)와 수집 자료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제24조 (사후관리 등) 제1항에는 공무국외여행자는 재단 홈페이지 및 행안부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귀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p> <p>⇒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귀국 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정보유통망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재 현황” 과 같이 총 2건의 국외출장에 대해 출장 종료 후 귀국보고서를 4~6일 경과 후 제출하여 출장복명을 소홀히 하였으며 및 재단 홈페이지(<a href="https://www.gcyf.or.kr">https://www.gcyf.or.kr</a>) 및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a href="https://btis.mpm.go.kr">https://btis.mpm.go.kr</a>)에 등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조치할 사항	<p>「공무국외여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 “주의”</p>

## V

# 시민감사관 의견

### 1. 감사관 : 김동철 시민감사관 (전 분야)

- 참여일 : 2022. 3. 17.(목) 14:00 ~ 17:00
- 지적사항 및 의견

#### ◎ 청소년재단 인문학특강 제안 -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전 부서
- 커리큘럼① ‘이순신 인성과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 만들기’
- 커리큘럼② ‘청렴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닦는다’

### 2. 감사관 : 조중상 시민감사관 (전 분야)

- 참여일 : 2022. 3. 18.(금) 14:00 ~ 17:00
- 지적사항 및 의견

#### ◎ 고양시 청소년 알바 지원 및 보호 -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사무국
- 적법한 근로환경에서 알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청소년 알바 취업 실태 조사 :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스 활용, 집계 및 분석

#### ◎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교육 강화 -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태 집중 점검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고양시-KB 배움누리과 협업체계 구축

#### ◎ 청소년 평화캠프, 한미 청소년 평화 컨퍼런스, 홈스테이 추진 -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전 부서
- 고양시 국제 자매 결연도시를 활용한 청소년 교류활동 점진적, 단계적 확대
- 고양시청 기획조정실, 전략산업과, 관광과의 업무 협조

◎ 장항습지 보호 및 랍사르 협약 등재를 위한 환경보호활동 - 지적 및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참여 청소년(552명)들이 정식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가능한 많은 고양시 청소년들이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시행

◎ 시 일자리박람회에 청소년 진로체험 및 취업 면접부스 마련 - 의견 제시

■ 관련부서 :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 고양시청 일자리 창출과와 업무협약 후 시행
- 관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실질적인 참여 및 취업 기회 확대 추진

## VI 우수 사례

###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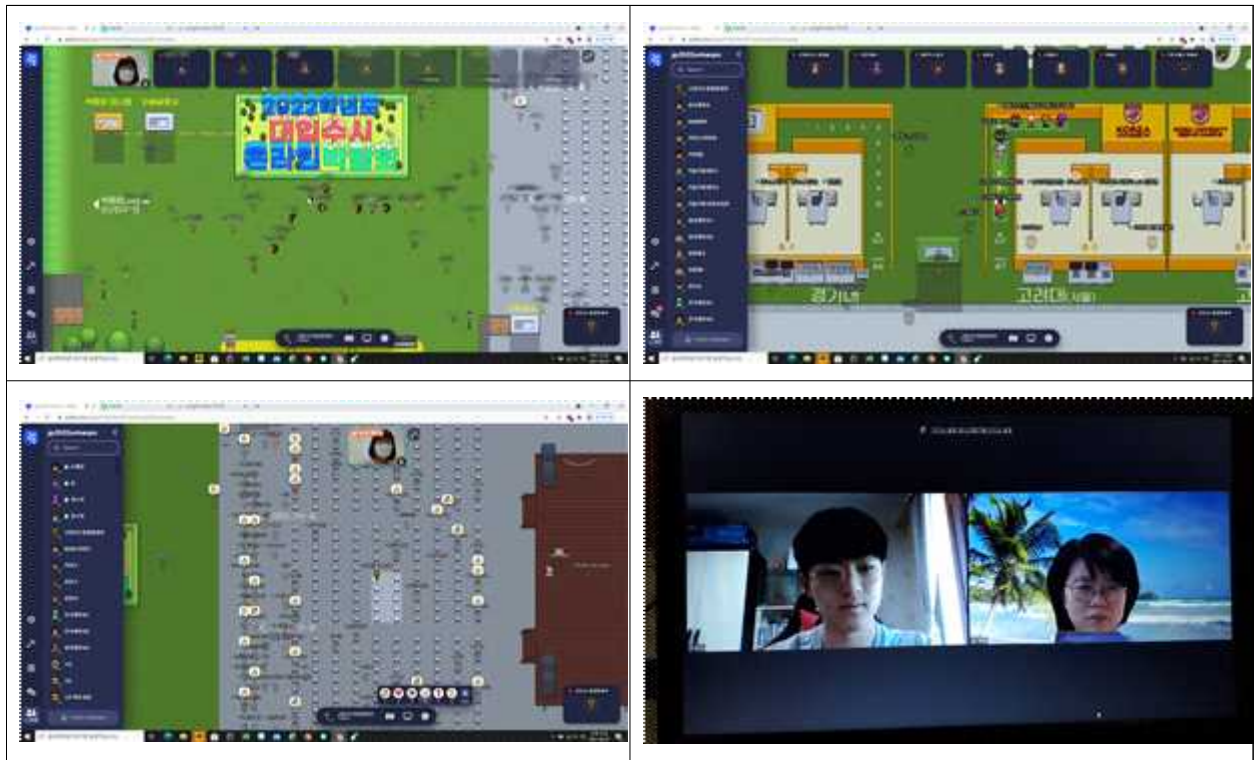
### 국내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대입수시 박람회' 개최

#### 1. 추진개요

-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고 혁신적인 대입수시 박람회 개최
-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수시 전형에 대한 대학, 학과 정보제공 및 입시상담 진행

#### 2. 추진내용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메타버스 활용 입시박람회(81개교) 운영 (2021. 8. 16.) 참가자 1,050명 참여
- 1:1 맞춤형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운영(2021. 8. 9. ~ 8. 14)



### 3. 주요 성과

- 코로나19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업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소 없이 사업 진행
- 시·교육청·센터 간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및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박람회,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행
- OBS, 경기뉴스 등 뉴스 방송 출연

## 사례 2

###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 기회 확대

#### 1. 추진개요

- ‘고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및 ‘청소년제안창작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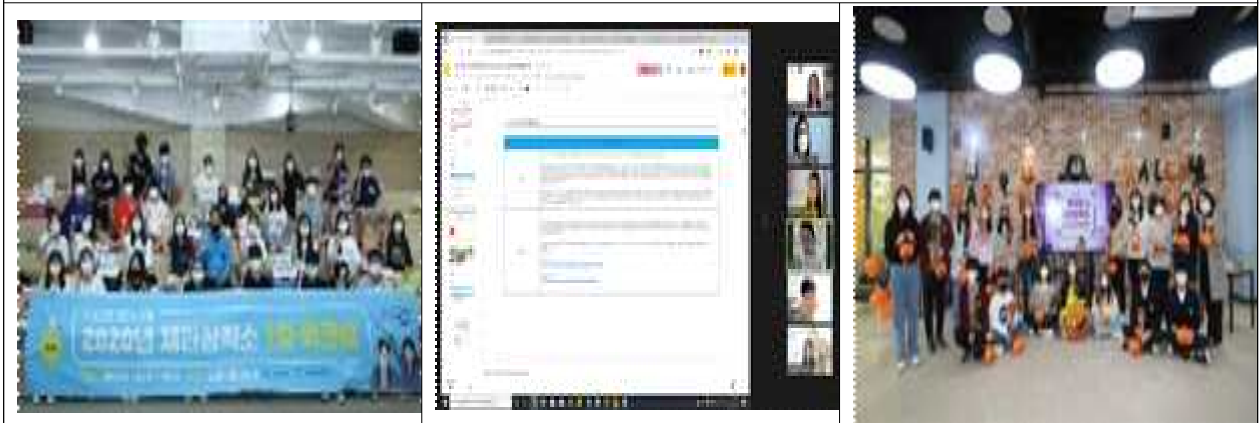
- 청소년이 정책 참여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고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제안대회 및 제안창작소 사업 운영

## 2. 추진내용

- 고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9~2021)
  -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정책제안서 접수
  - 예선심사, 본선팀 컨설팅, 본선대회(온라인 생중계) 운영
- 내손으로 만드는 고양, 제안창작소 운영 (2020~2021)
  - 정책 발굴 워크숍, 시장님과의 만남, 팀별워크숍, 공감투표, 고양시 부서 검토 및 의견반영, 공유회 운영 등



고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제안창작소

### 3. 주요 성과

- 고양시 기획정책관(조직제안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 정책 제안 관련 부서 검토 피드백 및 협력 운영 프로세스 내실화
- 청소년 정책 제안 반영 사례
  - 누르면 나옵니다 ‘선배들의 조언 자판기’, 공중화장실 개선 등
- 2021년 고양시 제안심사위원회 동상, 장려상 수상 (2건)
- 2019~2021년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 45건 발굴(고양시청소년정책 제안대회, 제안창작소)

#### 사례 3

#### 재미있는 놀이식 ‘학교폭력예방 보드게임’ 개발 보급

##### 1. 추진개요

- 인지행동치료 모델에 근거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
  -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가능성 보드게임 프로그램 개발·보급

##### 2. 추진내용

- 초등·중학교 대상 보드게임 이용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교폭력예방 보드게임 개발(파일럿테스트 효과검증, 교구제작), 놀이를 통해 배우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학교폭력 유형 알기), 태도(입장 공감하기), 대처방안(어떻게 행동할까?) 공유
- 학교 대상 프로그램 보급(80회, 1,587명 참여)
- 학생 대상 참여 만족도 평균 4.8점(5점 만점)



### 3. 주요 성과

- 인지행동치료에 근거한 학교폭력 예방 보드게임 개발 및 교구제작
-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를 통한 참여와 흥미 중심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교육 패러다임 제시
-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청소년, 교사 관심 및 호응도 증대
- 비폭력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 사례 4 지역 소상공인 연계 진로체험을 통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 1. 추진개요

- 지역자원을 연계한 고양형 위기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마을에서 배울 고양이’ 개발
- 위기청소년 진로역량개발을 통한 학업중단예방
- 진로센터 중심의 민·관·학 연계 협력체계 구축

### 2. 추진내용

- 지역소상공인 23개 직업체험처 발굴 및 업무협약

○ 고양시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도보 10분내 5개 체험Zone 구성(존별 4 ~ 5개 체험처)

○ 학교 내 대안교실 중·고등학생 9개교 79명 진로체험 지원

학교 내 대안교실?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급 ※ 치유중점, 공동체험중점, 학습·자기개발중점, 진로·직업중점

○ 진로체험 프로그램 136회 운영(2인 1조로 체험처 4회 방문)

○ 다회기 수준별 진로체험 운영(센터, 교사용) 매뉴얼 개발

○ 학생 인솔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축(20명)



연구팀 구성  
(시,교육청,학교,소상공인,진로센터)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경기도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위해 소상공인과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시는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들의 직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협약 내용은: 학교, 직업 및 내일, 서진, 실용직업, 벤처창업 관련 학습, 견학, 학교 교육, 업무 및, 등이다.

이제부터 시립 '교육청'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과 협력으로 참여를 받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을 돕는다.

협약 관련 문의: 고양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02-940-1100)로 하면 된다.

2023.04.03

업무협약식



4회기 진로체험



매뉴얼 개발

### 3. 주요 성과

#### ○ 지역사회 진로체험 연계 협력 모델 구축

<b>고양시</b>	<b>고양교육지원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진로교육지원 정책의 수립</li> <li>• 사업예산 및 홍보, 행정지원</li> <li>• 우수 체험처 지원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교사 참여 지원</li> <li>• 학생, 마을체험처 멘토 교육</li> <li>•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체험 플랫폼의 역할 수행</li> <li>• 체험처 컨설팅 및 안전점검</li> <li>• 피드백 및 교류의 장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체험공간 마련</li> <li>• 진로체험 프로그램 계획, 운영</li> <li>• 협의를 통한 조율 진행</li> </ul>
<b>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b>	<b>소상공인</b>

#### ○ 진로역량개발을 통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p><b>학생의 태도변화</b></p> <p>체험 전 자아탐색 5개 항목의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 그렇다)이 50%~63%사이인데 반해, <b>체험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80%이상으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높아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b></p>																																																																														
<p><b>학생의 84%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생겼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번 다회기(4회)기 지역사회(소상공인) 연계한 이번 진로체험 활동은 대안학교 학생(학업중단위기청소년)들의 무기력과 학업중단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분석됨</b></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매우그렇다</th> <th>그렇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지않다</th> <th>전혀그렇지않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1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td> <td>인원(명) 15</td> <td>13</td> <td>5</td> <td>0</td> <td>0</td> <td>33</td> </tr> <tr> <td></td> <td>비율(%) 45.5</td> <td>39.4</td> <td>15.1</td> <td>0</td> <td>0</td> <td>100</td> </tr> <tr> <td>2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 발상 및 창의력이 강화되었다.</td> <td>인원(명) 13</td> <td>15</td> <td>4</td> <td>1</td> <td>0</td> <td>33</td> </tr> <tr> <td></td> <td>비율(%) 39.4</td> <td>45.5</td> <td>12.1</td> <td>3.0</td> <td>0</td> <td>100</td> </tr> <tr> <td>3 체험을 통해 직업과 사회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었다.</td> <td>인원(명) 12</td> <td>15</td> <td>4</td> <td>2</td> <td>0</td> <td>33</td> </tr> <tr> <td></td> <td>비율(%) 36.4</td> <td>45.5</td> <td>12.1</td> <td>6.0</td> <td>0</td> <td>100</td> </tr> <tr> <td>4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여 관련 직업역량이 향상되었다.</td> <td>인원(명) 10</td> <td>17</td> <td>4</td> <td>2</td> <td>0</td> <td>33</td> </tr> <tr> <td></td> <td>비율(%) 30.3</td> <td>51.6</td> <td>12.1</td> <td>6.0</td> <td>0</td> <td>100</td> </tr> <tr> <td>5 나의 진로를 깊어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다.</td> <td>인원(명) 12</td> <td>13</td> <td>7</td> <td>1</td> <td>0</td> <td>33</td> </tr> <tr> <td></td> <td>비율(%) 36.4</td> <td>39.4</td> <td>21.2</td> <td>3.0</td> <td>0</td> <td>100</td> </tr> </tbody> </table>	항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1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	인원(명) 15	13	5	0	0	33		비율(%) 45.5	39.4	15.1	0	0	100	2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 발상 및 창의력이 강화되었다.	인원(명) 13	15	4	1	0	33		비율(%) 39.4	45.5	12.1	3.0	0	100	3 체험을 통해 직업과 사회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었다.	인원(명) 12	15	4	2	0	33		비율(%) 36.4	45.5	12.1	6.0	0	100	4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여 관련 직업역량이 향상되었다.	인원(명) 10	17	4	2	0	33		비율(%) 30.3	51.6	12.1	6.0	0	100	5 나의 진로를 깊어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다.	인원(명) 12	13	7	1	0	33		비율(%) 36.4	39.4	21.2	3.0	0	100
항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1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	인원(명) 15	13	5	0	0	33																																																																								
	비율(%) 45.5	39.4	15.1	0	0	100																																																																								
2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 발상 및 창의력이 강화되었다.	인원(명) 13	15	4	1	0	33																																																																								
	비율(%) 39.4	45.5	12.1	3.0	0	100																																																																								
3 체험을 통해 직업과 사회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었다.	인원(명) 12	15	4	2	0	33																																																																								
	비율(%) 36.4	45.5	12.1	6.0	0	100																																																																								
4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여 관련 직업역량이 향상되었다.	인원(명) 10	17	4	2	0	33																																																																								
	비율(%) 30.3	51.6	12.1	6.0	0	100																																																																								
5 나의 진로를 깊어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다.	인원(명) 12	13	7	1	0	33																																																																								
	비율(%) 36.4	39.4	21.2	3.0	0	100																																																																								

- 2021년 지역연계 진로체험 우수사례선정(교육부장관표창)
- 우수사례발표(교육부 2021 진로체험 성과보고회\_2021. 12. 22.)

##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

### **【2019】**

- 2019년 여성가족부 평가 최우수(3개) 및 우수(1개) 등급 선정
- 2019년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경기도지사)
- 경기도 초·중·고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표창(경기도지사)

### **【2020】**

- 제22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동상 수상
- 고양청소년영상공모전 동아리 부문 대상 수상(고양시장)
-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통일부장관상)
- 진로직업 교육 활동 우수기관 표창(경기도 교육감)
-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

### **【2019】**

- 2021년 여성가족부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재단 청소년시설 5개 전체)
-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작품공모전 수상(교육부장관)
- 2021년 멘토링 수기·영상 공모전(영상부문) 대상 수상(보건복지부장관)
- 2021학년도 진로직업교육활동 우수기관 표창(경기도교육감)
- 경기도 노동인권 영상 공모전 우수상(경기도지사)

이 외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주도적인 정책 제안·참여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과 고양시 청소년 정책에 의견 반영

## **Ⅶ**    **향후 추진계획**

---

### **1. 감사결과 처리**

-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시정·개선 요구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2. 지적사항 결과관리**

-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사항 이행결과 제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붙임    처분요구서 24부.    끝.